###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— 검 토 보 고 —

#### □ 제안이유

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있게 심의하기 위하여
 당연직 위원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기 위함.

#### □ 주요골자
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9인 이내로 축소하고,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.(안 제10조)

#### □ 참고사항

• 2005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
### □ 검토의견

-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
  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,
-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위원
  중 문화공보실장(행정기구 개편으로 폐지)과 자치행정과장을 삭제(실·과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우호적 심의 우려)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90호 제출년월일: 2004. 11. 5 제 출 자:예산군수

#### □ 제안이유

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좀더 객관적이고 신뢰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기 위함.

#### □ 주요골자
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9인 이내로 축소하고,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(안제10조)

### □ 참고사항

• 200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.

예산군 조례 제190호

##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11인"을 "9인"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1.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0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제8조의 규정에	제10조 (위원회의 구성)
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	
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	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	
포함하여 <u>11인</u>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	<u>9୧</u>
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	
으로 한다.	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	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
1. 당연직 위원 : 문화공보실장, 자치	1. 당연직 위원 : 사회복지과장
행정과장, 사회복지과장	
2.(생략)	2.(현행과 같음)